

##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정성 향상방안

### Plans to Adequacy Development about Taser Gun Operation of Police Officer

김 정 규  
호남대학교

Kim jung-gyu  
Honam Univ.

#### 요약

경찰 직무수행의 위협성이 점증하는 공권력 이행의 불안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발사식 전자충격기 기종인 테이저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개선, 안전성 향상, 장비관리개선 측면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 I. 서론

경찰 직무수행의 위협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은 해당 사회의 치안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다. 경찰의 원활한 방법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근무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근무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다면 경찰 존재에 대한 의미는 무색해지게 될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휴대 및 사용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는 신분상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위협한 직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여타의 공직과 차별되는 특수한 권리이기도 하다. 경찰의 직무행위는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요소들과 결부되어 많은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논쟁은 직무환경의 위협성이 증대되는 제반 여건과 무기사용 자체의 위협성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발생된다. 상반된 위협성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법적 수단으로 경찰이 도입한 장비가 발사형 전자충격기이다. 경찰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품은 테이저 건으로 2012년 기준 약 7천여정이 지급되었고 경찰지구대마다 4정, 파출소 마다 3정, 형사계 탐마다 2정씩 운용중에 있다.

테이저건은 장점 만큼이나 많은 단점이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다. 사용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부재로 인해 실무현장에서 운용상 혼란성이 존재한다. 정확한 격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경찰의 테이저건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검토할 사항들에 대하여 법제도적, 안전성 향상, 관리강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테이저건의 개념

테이저 건의 개발자는 존 커버(John Higson Cover)이다. 존 커버가 테이저건을 개발한 동기는 1960년대 항공기 납치 사건이 증가하자 항공기 내에서 안전하게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제품개발의 필요성에 있었다. 현재 한국 항공사에도 약 300정의 테이저 건이 운영되고 있다. 테이저 건이라는 명칭은 장비 존 커버가 소년시절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에 기인한다. 그 소설에 주인공인 토마스 스위프트(Thomas A Swift)와 그가 사용하는 장비로 묘사되는 전자소총(Electric Rifle)의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sup>1)</sup>.

한국 경찰이 운용중인 테이저 건은 미국 테이저 인터내셔널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델명은 X 26이다. 주요제원으로 크기는 길이15.3센티미터, 높이8.2센티미터, 폭3.3센티미터이다. 중량은 340그램, 최대사거리 6.5미터, 재질은 특수 폴리머이다. 가격은 약 120만원이다.

장비 몸체에 결합된 두 개의 탐침이 질소압력추진체에 의해 발사되어 용의자에 피부나 의복에 접지되면 2.1밀리 암페어의 전류와 순간 5만볼트의 전압이 흐르게 된다. 두 개의 탐침 중 상부는 장비에 장착된 레이저 조준점에 탄착되고 하부의 탐침은 8도 각도의 분산지점에 탄착된다. 야간 사용의 정확성을 위해 레이저 빔을 이용한 조준점을 이용할 수 있고 엘이디(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다. 발사체 없이 몸체만으로도 전기충격기로서 기능한다. 조정간은 안전과 사격모드가 있다. 탐침간의 간격은 사거리에 비례하여 멀어지게 되어 조준격발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특징이 된다.

### 2. 테이저건 운용 현황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842호, 2009.11.23.) 제2조에 따라 테이저 건은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로 분류된다. 다만 동 규정 8조에서는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라는 조항을 통해 테이저건을 일반 전자충격기와 구별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32호, 2014.4.28.) 제75조도 전자충격기를 경찰장구류에 포함시키고 있고 동 규칙 제79조 제2항의 2에서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의 금지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한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다.

테이저건은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2600호, 2014.5.20.)이라 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의 2는 경찰관의 경찰장구류의 사용 사유를 정하고 있다. 첫째,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하기 위한 경우 셋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가 목적인 때이다.

경찰은 200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테이저건을 약 606회 사용했다. 테이저건을 격발하여 효과적으로 범 죄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지만 오남용된 경우도 있었다. 오발로 인해 피의자 실명사고, 테이저건에 의한 2차충격 사망사건 등이 있었다. 실명사고에서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되었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국가배상 사유로 인정하였다.

### Ⅲ. 테이저건의 사용인식과 안전성 논란

경찰공무원의 테이저건 사용인식과 안전성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정윤중은 테이저건 운용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수준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테이저건의 총기사용 대체 효과에 대하여 조사대상 경찰관의 78.7퍼센트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테이저건의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1퍼센트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더욱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미사용 경찰관에 비해 테이저 건의 효과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테이저건의 인권침해 발생 소지에 대한 문항에는 약 40퍼센트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특히 단순한 진압장비라기 보다는 잠재적 살상무기로 인식하는 문항에 59.3퍼센트가 긍정하였다. 얼굴에 발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52.1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른 선행연구도 테이저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변지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테이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민형사상 소송계류의 인식이 높을수록, 2차 충격위험성 인식이 강할수록 테이저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 건 관련 현행 법률이 장비사용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고 미흡한 내용의 매뉴얼이 테이저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영기 등은 테이저건의 피격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테이저 건에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압이나 전신혈관저항 등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마취한 21~23.5킬로그램 무게의 돼지를 테이저건의 사용시간을 다르게 피격한 후 영향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돼지의 심장구조는 인간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노출시간은 5초와 10초로 분류하여 혈압, 혈관저항 등을 분석했다. 실험결과 테이저건에 노출된 후 두 집단

에서 모두에서 혈압과 혈관저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피격 이후 회복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었다. 5초간 노출된 집단에서는 15분 뒤에 정상범위로 회복된 반면, 10초간 노출된 군에서는 혈압이 114.5mmHg에서 81.0mmHg까지 떨어졌고, 1분간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인 심박출량은 각각 18%, 22% 증가했다.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젖산 분비량 역시 각각 2.01mM에서 3.35mM, 2.98mM에서 5.78mM으로 증가했고 30분이 경과 후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테이저건의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문제제기가 가능한 선행연구라 하겠다.

### Ⅳ. 테이저건의 효율적 사용방안

테이저건은 장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험성 측면에서 무기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테이저 건을 무기류로 상정한 세부적 범규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무 수준에서 테이저건을 잠재적 살상무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테이저건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과 매뉴얼의 구체화를 통해 사용규정에 관한 정확한 조항의 정비가 요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범주에 테이저건 운용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실험은 테이저건이 심혈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인체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의학적 데이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테이저건의 안전한 사용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자와 약물자 등 심혈관 조건이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고려한 보완적 조치가 요망된다. 비살상 진압장비라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오발사고는 테이저건의 관리강화와 격발훈련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에 의한 휴대보관과 평상 근무조건을 고려한 주야간 실내외 격발 등에 대한 훈련과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Taking Taser Seriously,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p. 1.
- [2] 경찰교육원,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2012.
- [3] 정윤중,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43-47, 원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4] 변지희, 한국 경찰의 테이저 사용 적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p.68-73, 2011.
- [5] EJ Park, SC Choi, JH Ahn, YG Min, "Repeated TASER X26 discharge resulted in adverse physiologic events with a dose-response relationship related to the duration of discharge in anesthetized swine model", Journal of Forensic Science 2012 (in press)